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법인명		④ 전화번호	
⑤ 대표자 성명			
⑥ 법인구분 1. 내국 2. 외국 3. 외투	⑦ 종류별 구분	중소기업	일반기업
		영리법인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 외 기업 당기순이익과세
		비영리법인	30 73 83 93
		60 74 84 94	50
⑧ 소재지			
⑨ 업태	⑩ 종목	⑪ 주업종코드	
⑫ 사업연도	⑬ 직전 사업연도 월수	개월	⑭ 예납기간
⑮ 수입금액	⑯ 신고일		
⑰ 신고납부 구분	1. 정기 신고		2. 기한 후 신고

신고 및 납부세액의 계산

구분		법인세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⑩ 산출세액	01
		⑪ 공제감면세액	02
		⑫ 가산세액	03
		⑬ 확정세액(⑩-⑪+⑫)	04
		⑭ 수시부과세액	05
		⑮ 원천납부세액	06
		⑯ 차감세액(⑬-⑭-⑮)	07
	6		09
	⑰ 중간예납세액 [⑰ × 직전 사업연도 월수]		09
	⑱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1
⑲ 차감중간예납세액(⑰-⑱)		12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13	
⑳ 가산세액		14	
㉑ 납부할세액계(⑲+⑳)		14	
㉒ 분납세액		15	
㉓ 납부세액(㉑-㉒)		16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㉔ 과세표준		31
	㉕ 세율		32
	㉖ 산출세액		33
	㉗ 공제감면세액		34
	㉘ 가산세액		42
	㉙ 수시부과세액		35
	㉚ 원천납부세액		36
	㉛ 중간예납세액(㉖-㉗+㉙-㉚)		37
	㉜ 납부할세액계(㉛)		39
	㉝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43
㉞ 분납세액		40	
㉟ 납부세액(㉞-㉟)		41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붙임 서류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에 따른 서류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1. 표준재무상태표, 2. 표준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에 따른 서류)
-------	--

작성 방법

1. ㉒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2. ㉔ 예납기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 합병·분할에 의하지 않은 신설의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3. ㉑ 업태·㉓ 종목: 주된 업태·종목을 적습니다.
4. ㉕ 수입금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5.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적용 법인
 - 가. ㉗ 산출세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㉙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 나. ㉘ 공제감면세액: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 다. ㉚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㉗)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라. ㉛ 가산세액: 기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2.2/10,000(다만,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6.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적용 법인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7. 붙임 서류는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만 해당합니다.